

인권 오디세이의 이정표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제3기 평화아카데미

2015.10.27

조효제(성공회대학교)

차 례

인권 일반론

인권과 근본원인 분석

인권의 5대 근본조건

- 구조적 차원

- 이데올로기의 차원

- 국제정치의 차원

- 사회심리의 차원

- 민주주의의 차원

나오면서

“...권리가 있다”—정확히 무슨 뜻?

<세계인권선언> 2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세계인권선언> 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인신의 안전에 대한 **권리가 있다.**”(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인권이 '이루어진다'—다양한 표현

- 실현(realization)
- 보호(protection)
- 증진(promotion)
- 이행(implementation)
- 준수(compliance 또는 observance)
- 충족(fulfilment)
- 접근(access)
- 보유(possession)

가장 정확한 표현 = 인권의 달성(achievement)

<세계인권선언> 전문

“모든 인민들과 모든 나라들이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
기준”

(a common standard of **achievement** for all peoples and all
nations)

인권 달성의 요소들(4-E)

1. 요구자격(Entitlement)
2. 향유(Enjoyment)
3. 자력화(Empowerment)
4. 포용(Embracement)

➔ 이 4요소들이 모두 충족될 때 이상적인 **인권 달성**

권리보유의 역설(Jack Donnelly)

- '권리보유의 역설'(possession paradox)
-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권리가 반드시 필요
- 그러나 권리를 이미 즐기고 있을 때엔 권리주장이 나타나지 않으며, 나타날 필요가 없음
- 권리의 보유와 권리의 요구는 서로 반비례 관계
- 권리가 있을 때 권리는 사라지고, 권리가 없을 때 권리가 나타난다
- 인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권리를 없애는 것=>
"인권은 자기소멸(self-liquidating) 상태를 지향한다"

어떤 경우에 인권이 침해되는가?

1. 규범적-도덕적으로 **정당한 요구가 법-제도-정책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권리를 요구함(인권운동 발생)
2. 법-제도적으로 권리 인정되고, 권리보유자가 요구하는데도 **의무담지자가 불이행**할 때=> 명백한 인권침해
3. 법-제도적으로 권리 인정되는데도 **권리보유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혹은 행사하기 힘들 때
(예) “법 위에 잠자는 권리” 또는 “허위자백”(유도심문, 협박, 회유, 설득, 구속 면하기 위해, 자포자기 등)
4. **다양한 차원의 권력들이** 권리의 달성을 차단함=> 1-2-3에 모두 영향 미침: 구조, 이데올로기, 국제관계, 사회심리, 민주주의

인권과 근본원인 분석

-Root Cause Analysis(RCA): 인권연구에서 대단히 중요해짐

-종래 인권론에서는 인권침해를 상호작용적 인과관계로 파악

=> “누가 그런 짓을 저질렀는가?”

=> 가해자를 색출하여 책임을 물림

-최근 인권론에서는 인권침해를 설명적 인과관계로 파악

=> “인권침해가 왜 일어났는가?”

=> 인권의 달성을 차단하는 다양한 차원의 권력들을 탐색

인권침해의 근본원인 인권달성의 근본조건

1. 구조적 차원
2. 이데올로기 차원
3. 국제관계와 정치의 차원
4. 사회심리적 차원
5. 국가와 민주주의 차원

구조—이념—국제—심리—민주주의



I. 구조적 차원(1)

인권침해의 구조적 계층화

- 모든 사람의 인권이 확률적으로 비슷한 빈도로 침해되지 않음
- 특정 계층/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인권침해가 집중적으로 발생
- 인권침해는 권력의 심층 병리적 증상이며, 누가 더 고통 받을지를 결정하는 사회적 조건들과 긴밀히 연관
- (예) 질병의 사회적 원인=똑같이 병균에 감염되더라도 부유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보다 삶의 취약성이 높아진 상태의 빈곤층이 훨씬 더 심하게 질병의 피해=삶의 조건 때문에 건강권이 박탈되는 현실

I. 구조적 차원(2)

구조적 폭력과 구조적 인권침해(요한 갈통)

-**폭력**: 인간 심신의 잠재적 실현 수준보다 실제적 실현 수준이 낮아져 있는 상태

-**구조적 폭력**의 특징(예: 전지구적 빈곤)

- 개인적인 폭력이 아니며,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 간접적인 피해 발생
- 불평등 권력=> 불평등 자원분포=>소득, 교육, 건강, 사회적 관계 등 '삶의 기회' 불평등
- 비가시적이며, 폭력의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일 수도 있다

I. 구조적 차원(3)

기후변화 사례

- 인류가 생존과 잠재적 실현을 위한 지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동원이 가능한 자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되돌리지 못하고 있음
- 잠재적 실현보다 실제적 실현이 구조적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
- 기후변화는 구조적 인권침해의 궁극적 형태
-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는 주범

II. 이데올로기 차원(1)

반인권 이데올로기의 특징

- 배타적 구별을 강조: 배제적 이념
- 개인보다 집단을 강조
 - 이익공유 집단권리 v. 일체적 집단권리
- 국가안보를 최우선 과업으로 상정하는 경향
- 강한 공리주의적 경향
- 남성 지배와 특정한 형태의 섹슈얼리티를 당연시
- 사회 다원주의 경향
- 집단간 갈등해결 방식으로 폭력, 지배, 전쟁을 선호

II. 이데올로기 차원(2)

20세기 이데올로기와 인권의 상호작용

-세계인권선언(1948): 세계사적 이념 경쟁의 변증법적 통합

John Humphrey “인도적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결합하려 했다”

-그러나 냉전은 정반대 경향: 극단적 이념 경쟁

-인권의 통합이념적 취지는 사라지고 미-소 양 진영은 인권을 진영 논리로 간주

-미국은 자유권, 소련은 사회권만 강조=> 상대를 악으로 선전

-인권의 정치화, 외교도구화

-인권운동의 의식적 중립, 탈정치적, 비당파적 행보

-냉전 반세기는 현대인권을 왜곡시키는데 결정적 역할

II. 이데올로기 차원(3)

친인권 이데올로기

- 현대 자유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와 구분
- 자유민주적 복지국가
- 사회민주주의
- 인도주의
- 페미니즘
- 세계주의
- 시민적 공동체주의
- 급진 민주주의
- 녹색주의
- 다문화주의
-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III. 국제정치 차원(1)

국제적 인권침해 요인들

- 주권국가들로 이루어진 아나키적 국제체제
- 국가간 전쟁과 국가내 무력충돌:

전쟁<->인권침해의 양방향 인과성

“생명권은 가장 기본적 권리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강대국들은 처벌 받지 않고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다” (Michael Haas)

- 지정학적 경쟁과 갈등
- 인권원리를 미약하게 내면화한 국가들
- 신자유주의적 경제지구화

III. 국제정치 차원(2)

국제인권법의 효과 논쟁

-국제인권법 제도가 확대될수록 전세계 인권이 당연히 개선될 것이라고 가정해 왔음

-국제인권법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국가들이 인권법을 얼마나 준수하는가

-법준수 이론'(compliance theory)=> "Oona Hathaway 논쟁"

-국제인권법 가입-비준이 인권 향상?

⇒인권을 잘 보호하는 나라: 인권조약 비준 전후의 차이가 없음

⇒인권을 유린하는 나라: 비준 전후의 변화가 크지 않음

⇒심지어 인권조약 비준 후 인권상황이 더 악화된 경우도 있음

III. 국제정치 차원(3)

국제적 차원의 인권을 새롭게 상상하기

- 국제인권법의 도구적 기능 v. 표출적 기능
- 국제적 차원의 인권에 있어 가장 현저한 특징은 문제와 해결책의 불일치
- “전쟁 또는 전쟁 위협을 폐지하지 않는 한 인간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성은 존재할 수 없다”(John Humphrey)
- 강대국들에 의한 인권의 정치화 및 오용의 문제
- 유엔 프로세스: “이행력의 부재”라는 치명적 약점 + 전문주의
- 국제인권법의 ‘순진한 규정숭배’(rule naiveté)=Eric Posner
- 국제인권법의 제도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것의 이행력이 높아지기보다 그것의 규범력이 더 높아진다

IV. 사회심리 차원(1)

-전통적으로 일반대중은 잠재적으로 인권 피해자 집단이고, 인권 규범과 인권실행의 '혜택'을 받는 집단이므로 인권을 '당연히' 지지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대중은 자신이 직접적 권리침해의 피해자가 되기 전에는 인권에 대해 복합적인 태도를 지닐 때가 많다

-**민주사회에서 대중의 여론과 의식은 궁극적인 의사결정자**이므로, 인권과 같은 '절대적' 규범 역시 이러한 전제로부터 완전히 초연한 상태에서 실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사회일수록 정책 입안, 의제설정, 우선순위 결정, 자원배분 결정에 있어 여론의 향배가 중요한 영향

IV. 사회심리 차원(2)

대중 인권의식의 차원들

- **지지**(endorsement): 인권가치와 규범에 대한 긍정과 승인
- **의지**(commitment):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헌신의 정도
- **제한**(restriction):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 인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
- **인식**(awareness): 인권상황을 파악하는 정도와 인권에 관련된 지식 유무
- **참여**(engagement): 인권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경험

대중의 인권의식은 다차원적 요인으로 결정

지지와 의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지만 이 둘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님

의지와 제한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기 쉬움

지지와 제한 사이에는 별 관련성이 없음

IV. 사회심리 차원(3)

왜 약자집단이 인권에 미온적?

시스템 정당화(System justification) 이론

- 시스템 내의 구성원들이 현 시스템 질서를 지지하고 합리화
 - 외부요인이 시스템을 위협한다고 느낄 때 현 시스템을 지지하고 합리화하는 경향
 - 시스템 내의 약자집단이 암묵적으로 강자집단을 선호하는 경향=> 사회적 정체성 이론과 정반대
 - 약자집단이 현 시스템에 위협이 되는 평등주의 정책을 반대하는 경향 있음
 - 약자집단 구성원의 권리의식이 낮을 가능성
 - 약자집단 구성원이 현 시스템에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음
 - 시스템 정당화 강도 높을수록 약자집단의 인권요구 낮아짐
- 이유?=> 인지 부조화 이론 + 상보적 지위 관념

V. 민주주의 차원(1)

국가의 이중성과 인권

- **제노사이드(genocide)**: 어떤 국적·민족·인종·종교 집단에 속한 구성원 전부 혹은 일부를 파괴할 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가하는 것. ① 살해, 또는 ② 심각한 심신 장애 초래, 또는 ③ 신체적 파괴를 목적으로 가혹한 생존조건을 고의적으로 부과, 또는 ④ 어떤 집단 내에서 출생을 금지시키는 조처, 또는 ⑤ 한 집단의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귀속시키는 행위 (Raphael Lemkin)

- **데모사이드(Democide)**: 국가(The State)가 범죄주체가 되어 사람들을 대량으로 죽인 것을 지칭할 수 있는 개념. 정치적 동기의 폴리티사이드(politicide) 또는 여타 동기에 의한 살해 포함.

20세기에 262,000,000 명 죽음 => “**집중된 국가권력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권침해 주범**” (Rudolf Rummel)

V. 민주주의 차원(2)

국가내 인권침해의 원인

- 국가안보상의 고려
- 외부침략에 대한 공포
- 독재통치의 유지 및 특정이념의 고수
- 국가의 무능력

V. 민주주의 차원(3)

인권달성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

- 민주주의의 질
- 교육 수준
- 국가의 인구
- 도시화 비율
- 거시경제적 요인
- 상대적 소득 평등 그리고 전반적 불평등의 감소
- 복지예산 비중
- 군사비 비중
- 해외투자 및 국제무역
- 구조조정 프로그램 및 긴축예산
- 국가의 재정원
- 국내 사법제도
- 국제인권법 제도
- 여성 정치참여
- 언론 미디어 환경

나오면서

- 인권은 근본차원과 연결되어야 유의미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 인권의 간판을 단 모든 제도, 규정, 조직, 개입은 민주주의의 심화, 인권에 호의적인 정부,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 보다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정의로운 국제질서, 전쟁위협 해소와 평화구축, 인간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받드는 이념, 사람들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에 의 심리 정향을 지닌 인격의 함양이라는 근본조건의 토대 위에서 장기적이고 진정한 효과를 발휘한다
- 시급한 인권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 + 근본차원에서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모두 필요
- 사회문제를 인권문제로 형상화할 때에도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적절한 프레임 방식과 적절하지 않은 프레임 방식이 있을 수 있다